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양도·양수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원인	[] 매매 [] 상속 [] 증여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